

## 외화증권(채권)취득보고서(법인 및 개인기업 설립보고서 포함)

외화증권       외화채권

1. 투자자현황 (담당자명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전화번호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

상호 또는 성명		설립년월일	
소재지(주소)			
투자자규모	<input type="checkbox"/> 대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중소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사업자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		
신고일자		신고번호	

2. 현지법인현황

법인명			
소재지(주소)			
법인형태	<input type="checkbox"/> 법인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<input type="checkbox"/> 해외자원개발사업	납입자본금	
투자형태 <sup>주1)</sup>	<input type="checkbox"/> 단독투자 <input type="checkbox"/> 공동투자 <input type="checkbox"/> 합작투자(한국측 투자비율 :        %)		
설립등기일		영업개시(예정)일	결산일

주1) "공동투자"라 함은 국내투자자와 공동으로 투자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"합작투자"라 함은 비거주자와 합작으로 투자하는 경우를 의미함.

3. 외화증권 취득 내용

증권취득일 (자본금출자일)		증권종류	
액면가액합계		취득가액합계	
증권발행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증권발행 <input type="checkbox"/> 증권미발행		

4. 외화채권 취득 내용

채권취득일		대부원금	
이자율		대부기간	
원금회수방법	<input type="checkbox"/> 만기일시회수 <input type="checkbox"/> 분할회수(총회)		

【첨부서류】

※ 투자금액(대여자금) 납입(제공)후 6월 이내에 제출할 것

1. 외화증권취득인 경우

가. 현지법인 설립인 경우

- 등기부 등본 또는 공증서류
- 증권 사본(※증권발행이 없는 경우 출자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(출자증명서 등))

나. 개인기업 영위인 경우

- 사업영위사실을 입증(당해 현물출자 이행사항 포함)할 수 있는 공증서류

2. 외화채권 취득인 경우(대부투자)

- 대부 상대방의 대부금 영수증명서 또는 약속어음



# 외화증권(채권) 취득보고 관련 유의사항

1. 외화증권(채권)취득보고서의 내용과 첨부서류의 내용은 반드시 일치해야 함  
(취득일, 법인명, 액면가액 등 일치 여부 확인할 것)
2. 해외투자자는 현지법인을 설립한 경우 회사설립 내용을 나타내는 등기부등본(중국의 경우 공증서)과 해외투자자의 현지 법인에 대한 자본금 출자내용을 나타내는 증권사본을 제출해야 하나, 현지법 상 증권발행이 없는 경우(중국, 베트남, 독일 등)에는 증권사본 대신에 해외투자자의 현지법인에 대한 출자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 
(예) 중국의 경우, 협자보고서 등
3. 투자금액 또는 대여자금 송금 후 6개월 이내에 외화증권(채권)취득보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, 형사벌칙 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

## ※ 주요항목 기재 요령

- 납입자본금 : 본 보고금액 포함한 보고시점까지의 현지법인의 납입 총 자본금을 기재
- 증권종류 : 보통주, 우선주 등을 말하며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 신고 대상이 아님
- 액면가액 : 증권에 기재되어 있는 액면가×수량
- 취득가액 : 계약상 취득한 증권의 주당 가격×수량, 혹은 계약상 취득가액
  - ※ 액면가액과 취득가액이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고시 주식가치평가보고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함
- 증권발행 여부 : 증권발행과 증권미발행 중 선택하며, 증권미발행인 경우 출자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함
- 채권취득일 : 차주에게 자금이 입금된 날짜
- 대부원금 : 신고금액이 아닌 채권취득 보고대상금액(송금액) 기재

